

한방 칼럼

# 拱辰丹 (공진단)

## 1. 공진단이란? (원문 해석)

凡男子方當壯年,而眞氣猶怯. 此乃稟賦素弱,非虛而然,僭燥之藥,尤宜速戒.

(勿足厥逆, 便雲陰多, 如斯治之, 不惟不能愈疾, 大病自此生矣.)

滋益之方,群品稍衆,藥力細微,難見功效.

但固天元一氣,使水升火降,則五藏自和,百病不生,此方主之



하고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여 인체의 오장육부가 스스로 균형을 맞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 3. 공진단은 임금이나 황제가 정말 복용했을까?

그 어떤 문헌에도 공진단을 황제가 복용했다거나, 임금이 복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경옥고(琼玉膏)는 고종황제께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복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4. 공진단은 그 누구에게나 다 좋은 보약인가?

예를 들어 중풍,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병이 있다면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두부(머리)에 열이 많거나, 몸에 열이 많고 활동적이라면 공진단을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고, 몸이 허한 사람에게 좋은 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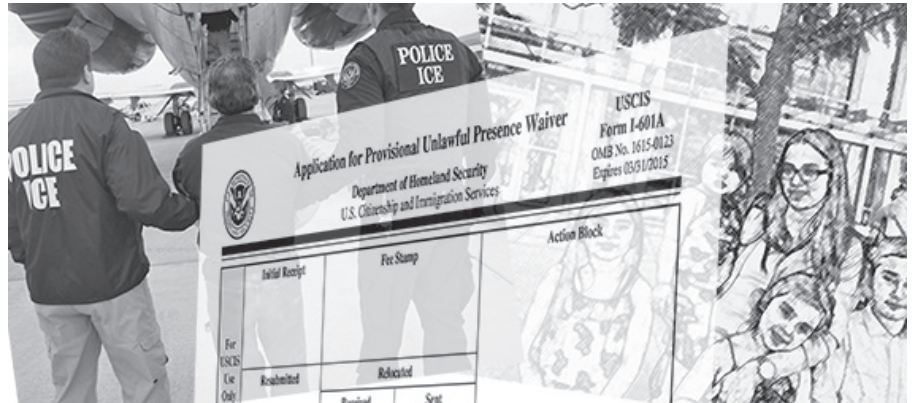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이우베엘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 601 A 면제 신청 분석 (2) 극심한 고통



1206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601A 면제는 불법입국(Entry without Inspection)이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불법성을 면제해줌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특히 불법입국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구제책입니다.

이 면제 승인을 위한 조건은 601A 신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신청인이 면제를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준이 되는 친족이 배우자와 부모님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고려 대상이기는 하지만 승인의 결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이 극심한 고통에 대한 세부사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민심사관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해 왔고 그동안 승인률이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말에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심사관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건의안들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최근 승인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 - 만약 601A 신청자가 미국을 떠날 경우 남겨진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 같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현재 큰 질병을 앓고 있어서 601A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고통 - 위의 배우자/부모님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예를 들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신청인 미국을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개인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법인 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 오승윤 공인 회계사 (Michael S. OH, CPA)

오승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기업 CFO로서의

- 1. 풍부한 실무 경험
- 2. 정확한 회계 업무
- 3. 올바른 직업 윤리로

기업과 개인의 절세를 도와 드립니다.

회사 설립 및 상담	Corporation 설립 및 해산,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Partnership(General & Limited Partnership)
세금 업무	개인/Corporation/LLC/Partnership 등에 관련된 모든 세금 보고
세무감사 대행	IRS, SBOE, FTB, EDD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회계 업무	Computerized 회계 장부 정리, Payroll Servic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투자 자문	IRA, SEP, 401K, Mutual Funds
기타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및 설치(Quickbooks Pro Specialist), ABC License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UC San Diego졸업  
미 해양 연구소 근무(NASC)  
미 기업 및 한국 대기업 CFO역임  
Member of CS



714.522.1120

FAX. 714.522.11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